

공고 제 7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5년 07월 20일

용궁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65-08-04	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원당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5-07-14